스위스 요소가 있는 국경 간 유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싱가포르는 상속에 관하여 보통법상의 준거법 결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동산 상속은 망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domicile)법에 따릅니다. 부동산 상속은 소재지법(lex situs)에 따릅니다.[1] 디지털 자산은 동산입니다. 이를 다루기 위해 싱가포르 검인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그 소재지는 *Cheong Jun Yoong* 판결의 규칙을 따릅니다. 즉 디지털 자산은 키를 지배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있습니다.[2] 스위스는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86조 이하를 적용합니다. 스위스에 최종 주소를 둔 사람의 유산에 대해서는 스위스 법원과 관청이 관할권을 가지며 스위스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본국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스위스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이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생존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더 이상 보호받지 않습니다.[4] 싱가포르에는 상속(가족부양)법(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1966)에 따른 제한적 부양 청구 외에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5]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실무에서 나타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크(Zug)에 주소를 둔 창업자가 추크에 자기수탁 토큰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계좌를 보유한 채 사망합니다. 스위스의 관점에서는 상속 전체에 스위스법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법도 주소지 규칙을 적용하여 동산 상속을 스위스법에 맡깁니다. 따라서 스위스 민법 제471조에 따른 유류분권자의 권리는 토큰이 어디에 있든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스위스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보유자는 그 반대입니다. 상속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법이 적용됩니다. 스위스 수탁기관은 스위스법상 인정되는 서류가 제출되면 토큰을 인도합니다.

검인장과 그 승인

실무상 장애물은 서류입니다. 싱가포르의 거래소나 수탁기관은 싱가포르의 유언검인장이나 유산관리장이 있어야만 사망 고객의 자산을 인도합니다. 싱가포르는 유언검인 및 유산관리법(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s 47에 따라 영연방 국가의 검인장을 재봉인(reseal)합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영연방 국가가 아니므로 스위스 상속증명서(Erbbescheinigung)는 재봉인될 수 없습니다.[6] 따라서 스위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싱가포르 검인장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망인의 경우 이는 싱가포르 소재 자산으로 한정된 유산관리장이며,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첨부합니다. 신청에는 외국법과 신청인의 권리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며, 보통 스위스 변호사의 선서진술서로 제출합니다.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거래소 계좌는 동결되며,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이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 싱가포르에 주소를 둔 망인의 자산을 인도하는 스위스 수탁기관은 대개 아포스티유와 공증 번역을 갖춘 싱가포르 검인장을 받아들입니다. 이 검인장은 스위스 국제사법 제96조에 따라 승인됩니다. 이 조항은 망인의 최종 주소지국에서 내려진 상속 관련 외국 결정과 문서의 승인을 규정합니다.[7] 이 점에서 스위스 실무는 싱가포르보다 덜 형식적입니다. 제 경험상 스위스 수탁기관이 더 수월한 상대방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쟁점	싱가포르	스위스
토큰 상속의 준거법	사망 당시 주소지법(보통법)	스위스에 주소를 둔 망인은 스위스법(PILA 제90조). 외국인은 본국법 선택 가능
유류분	없음(부양 청구만 가능)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호받음(스위스 민법 제471조)
유언의 방식상 유효성	서면, 서명, 증인 2인(Wills Act s 6). 전자 유언 불가	자필, 공정 또는 구수 유언(스위스 민법 제498조 이하). 전자 유언 불가
거래소 계좌 접근에 필요한 서류	싱가포르 검인장. 외국 검인장은 영연방인 경우에만 재봉인	상속증명서(Erbbescheinigung) 또는 승인된 외국 검인장(PILA 제96조)
상속세	2008년 2월 15일 이후 없음	칸톤(주)세. 추크와 취리히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면제
상속 목적상 토큰의 소재지	키 보유자의 거주지(*Cheong Jun Yoong*)	미확정. 실무는 수탁기관의 소재지나 망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두 거점에 걸친 유산의 설계

두 곳 모두에 자산과 가족이 있는 보유자를 위한 설계의 해답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명확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준거법과 법정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추크와 싱가포르를 오가며 생활하는 창업자는 두 법체계가 모두 유산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각 법역별 유언입니다. 각 유언은 해당 법역의 자산으로 한정하고, 다른 유언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며, 공동의 유언집행자를 두거나 유언집행자들 사이를 조율합니다. 셋째는 수탁입니다. 각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기관에 보관된 토큰은 현지 서류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수탁 토큰은 검인장을 어디서 받든 유언집행자가 키를 보유하거나 조합해야 합니다. 넷째는 유류분 점검입니다. 스위스에 주소를 둔 보유자는 싱가포르 유언이나 싱가포르 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탁을 통해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 상속인은 스위스 민법 제522조 이하의 반환 규정에 따라 신탁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헤이그 협약에 따라 신탁을 승인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8] 제P편 제VIII장은 이러한 요소에서 도출되는 상속설계 10대 점검 절차를 설명합니다.

국경 간 관점

미리 세 가지를 정해 두면 추크와 싱가포르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일관된 상속설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주소를 둘 것인지, 누가 키의 어느 구성요소를 보유할 것인지, 어느 수탁기관이 어떤 서류로 자산을 인도할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들을 열어 둔 창업자는 가족에게 싱가포르의 동결된 거래소 계좌와 아무도 열 수 없는 추크의 하드웨어 지갑을 남기게 됩니다. 그 뒤에는 스위스 유류분권자와 싱가포르 수익자 사이의 분쟁이 이어지는데, 그 대상 자산은 그때쯤이면 원래 가치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의 모든 요소는 어느 쪽에서든 유능한 자문가에게는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어려움은 오직 필요해지기 전에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주

1. 동산 및 부동산 상속에 관한 보통법 규칙은 싱가포르에서 적용되고 있음. 예컨대 *Re Estate of Chong Siew Kum* [2005] SGHC 41. ↩
2. *Cheong Jun Yoong v Three Arrows Capital Ltd and others* [2024] SGHC 21, [59]–[63]. ↩
3. PILA (SR 291) 제86조, 제87조 및 제90조–제91조. ↩
4. 스위스 민법(SR 210) 제471조,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
5.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1966, s 3. ↩
6.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1934, s 47 (영연방 검인장의 재봉인). ↩
7. PILA (SR 291) 제96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 스위스 민법 제522조–제533조 (유류분 침해에 대한 감쇄소송). 헤이그 신탁협약(Hague Trusts Convention) 제15조는 상속에 관한 법정지의 강행 규정을 유지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